

- 공모 : 2023.11.1.(수)
- 접수 : 2023.11.6.(월) - 11.30.(목) 16시
- 최종선정발표 : 2024.2.26.(월)(예정)
- 문의 : 지원사업1팀 070-5129-5446

2024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공모

성평등사회조성사업



한국여성재단
KOREA FOUNDATION FOR WOMEN

<목 차>

2024년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개요	1
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(자유주제 · 지정주제)	3
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(신생여성단체지원)	6
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(차세대여성운동지원)	9

2024년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개요

1. 지원사업 취지

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

2. 사업추진기간

2024년 3월~2024년 10월 (총 8개월)

3. 지원 내용

구분	분야
I. 성평등사회조성사업	1. 자유주제 2. 지정주제(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)
II.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	1. 신생여성단체 지원 2. 차세대여성운동 지원

4. 공모일정 ※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일정	비고
사업공고	2023년 11월 1일(수)	•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
접수	2023년 11월 6일(화) ~11월 30일(목) 16시	• 마감시간 16시 이후 접수 불가 • 온라인(구글폼) 및 이메일 접수 ※ 구글폼 작성 후 파일 제출 (support@womenfund.or.kr)
사업 심사 (사무처/서류/면접)	2023년 12월 1일(금) ~2024년 2월 9일(금)	•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(온라인)
선정 발표	2024년 2월 26일(월)	•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
교부금신청서 제출	2024년 3월	• 최종 선정 이후 진행 • 사업 추진은 10월 31일 이내 종료 • ‘활동공유회’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관련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니, 선정단체는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
사업 오리엔테이션	2024년 3월 14일(목) 예정	
사업 실시	2024년 3월 ~ 10월	
중간 워크숍	2024년 6월	
최종보고서 제출	2024년 11월 15일 이내	
활동공유회	2024년 11월	

※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일, 실무자 워크숍(사업 오리엔테이션 · 중간워크숍 · 활동공유회),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구분	내 용
접수 방법	온라인(구글폼), 이메일 접수
접수 기간	2023년 11월 6일(화) ~ 11월 30일(목) 16시
제출 방법	<p>(1)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(https://womenfund.or.kr) 접속</p> <p>(2) [소식] - [공지/공모] 신청서 서식 내려 받기</p> <p>(3) 지원신청서 작성</p> <p>(4) 온라인 구글폼(https://forms.gle/i3LSoGbHkvEsY4hMA) 응답 제출</p> <p>(5) 직인 날인된 한글(hwp)파일로 신청서 제출(support@womenfund.or.kr) ※ 파일명 <2024_지원분야_단체명.hwp></p> <p>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</p> <p>②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고유번호증 사본 1부 - 차세대여성운동지원 등 '미등록단체'의 경우 대표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*표시) 사본</p> <p>③ 지원신청서(지정 서식)</p> <p>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지정 서식)</p>

6. 문의

지원사업1팀 (ripple@womenfund.or.kr / 070-5129-5446)

지원사업별 세부 내용

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
(자유주제 · 지정주제)

1. 사업명

성평등사회조성사업(자유주제 · 지정주제)

2. 사업내용

구분		내용
[자유공모] 성평등사회 조성사업	자유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평등 사회 실현 및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 사업, 성평등 문화 정착에 과급력이 있는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 인권 증진 •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 • 지역 및 풀뿌리 여성운동 활성화 • 과학(의료)기술과 젠더혁신, 정보기술과 젠더 • 미래세대와 성평등 • 기후변화와 젠더 • 여성운동기록 • 4차 산업혁명과 여성 등
	지정주제: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•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 치유 • 다문화가족의 폭력 예방 • 장애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• 사이버 성폭력·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• 조직/사회 내 반성폭력 의식 확대 및 향상 등 <p>※ 단, 교육 관련 사업 지원 불가 (예시: 상담활동가·전문강사 양성 교육,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)</p>

3. 지원사업 구분

지원분야	지원대상	사업추진기간	지원규모	비고
자유주제	비영리 여성단체	24년 3월~10월	최대 2,000만원	관리운영비 최대 30% 편성 가능
지정주제: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	비영리 여성단체	24년 3월~10월	최대 1,500만원	관리운영비 최대 30% 편성 가능

※ ‘자유주제’ 분야에 신청한 사업 중 ‘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’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, 심사 과정에서 분야가 변경(자유주제 → 지정주제)될 수 있습니다.

4. 신청대상

- 1) 비영리 여성단체
- 2)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. 단,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 (대표 제외)이 구성되어야 하며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

※ 신청제외 단체

- 시민사회단체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(단, 여성단체의 부설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경우 지원 가능)
- 대학 내 부설기관,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5. 사업비 규모

- 자유주제 : 사업당 최대 2,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(관리운영비 포함)
- 지정주제 : 사업당 최대 1,5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(관리운영비 포함)

6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	세부내용
사업 성격	신규사업	•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체의 신규 사업
사업 진행방식	단독사업	•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	연대사업	•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
7. 신청 시 유의사항

1)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(단,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 가능)
-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경상적 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2) 사업신청의 제한
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 외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
(※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필수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시설, 컴퓨터, 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3)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 - 한국여성재단 회계지침 <파일명: (회계지침)2024 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(공통)>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
 - 관리운영비(운영비·인건비)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3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
- ※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(신생여성단체지원)

1. 사업명

신생여성단체지원사업

2. 사업 목적

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,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지원 내용

1) 지원사업 구분

지원분야	지원대상	사업추진기간	지원예산
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	비영리 신생여성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4년 3월~2025년 10월 이내 ※ 2년 연속 지원 – 1차년도: 24년 3월~10월 2차년도: 25년 3월~10월 * 1차년도 사업평가 후 2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(인건비 포함) 지원 • 연도별 최대 1,000만원 (2년간 최대 2,000만원) ※ 연간 관리운영비 최대 40%

2) 신청사업 내용

-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지원
- 사업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체의 신규사업

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

-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체 지원
-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
-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

신생여성단체 관리운영비 지원

- 단체 운영비 지원
- 단체 인건비 지원

4. 신청대상 :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- 1)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
- 2) 2021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어,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
- 3)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. 단,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 (대표 제외)이 구성되어야 하며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

※ 신청제외 단체

- 시민사회단체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(단, 여성단체의 부설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경우 지원 가능)
- 대학 내 부설기관,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5. 신청규모

단체당 연도별 최대 1,000만원 지원 (2년간 최대 2,000만원)

6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세부내용
신규사업	·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체의 신규 사업
연속사업	· 2023년에 선정된 '신생여성단체지원'의 연속 사업

7. 신청 시 유의사항

1) 지원 제외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경상적 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 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2) 사업 신청의 제한
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
(※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필수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3)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한국여성재단 회계지침 <파일명: (회계지침)2024 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(공통)>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됨
- 관리운영비(운영비·인건비)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4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.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3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

※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(차세대여성운동지원)

1. 사업명

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

2. 사업 목적

온·오프라인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

3. 지원내용

1) 지원사업 구분

지원분야	지원대상	사업추진기간	지원예산
차세대 여성운동 지원	여성주의운동 그룹	2024년 3월 ~ 10월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목적 사업비 지원 ※ 활동과 관련된 제반 비용 신청 가능 ※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• 최대 500만원 ※ 기타소득세 별도 지원

2) 신청사업 내용

-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

4. 신청대상: 여성주의운동 그룹 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- 1) 최소 5명으로 구성
- 2) 여성주의에 기반한 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 된 그룹으로서 여성운동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룹 ※ 6개월 이상의 활동경력 제시 필수
- 3) 등록 단체(기관)는 지원 불가

5. 신청 시 유의사항

- 그룹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1인이 2개 이상 그룹에 포함된 중복 지원 불가능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한국여성재단 회계지침 <파일명: (회계지침)2024 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(공통)>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됨
- 관리운영비(운영비·인건비)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4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.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3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
- ※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